위기아동 · 청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아동 · 청년]

『위기아동 · 청년』 콘텐츠는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 · 은둔한 34세 이하 아동 · 청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위기아동 · 청년의 개념과 지원 전달체계(전담조직, 위기아동 · 청년 정책센터, 전문기관)부터, 사례관리 신청 · 발굴, 상담, 지원대상자 선정, 사례관리 계획 수립을 거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 건강관리 · 학업 및 취업 · 주거지원과 자기돌봄비, 고립 · 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안내합니다. 또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과 문의처 등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위기아동 · 청년 1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알아보기 4
1.1.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4
1.1.1. 위기아동·청년 지원이란? 4
1.1.2.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 7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10
2.1.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10
2.1.1. 사례관리 신청 10
2.1.2. 위기아동·청년 발굴 11
2.2. 상담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13
2.2.1. 상담 실시 13
2.2.2. 지원대상자 선정 등 14
2.3.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16
2.3.1. 계획 수립, 관리 및 종료 16
3. 위기아동·청년 지원 내용 20
3.1. 공통 지원 20
3.1.1. 건강, 학업, 주거 등 지원 20
3.2.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21
3.2.1. 자기돌봄비 등 지원 21
3.3.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23
3.3.1.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23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알아보기

1.1.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1.1.1. 위기아동·청년 지원이란?

“위기아동·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의 개념 및 범위

▪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 참조).

구분	내용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그 밖의 사람	그 밖의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 연령 산정 특례

·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2025년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1쪽 참조).

지원 절차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도

▪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참조).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	상담	▶	지원대상자 선정 등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지원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비교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5쪽 참조).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2027. 3. 26. 시행 예정)
대상자	연령에 따른 지원 근거법이 달라 지원 분절 우려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 이상) *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9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9세 이상)
지원 내용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자조모임, 멘토링,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 가족돌봄 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 **아픈 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 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 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 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족 지원(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위기아동·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아동·청년의 원스톱 창구 √ 청년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위기아동·청년은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ON(mohw2030.c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병·돌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 간병(돌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지원 체계도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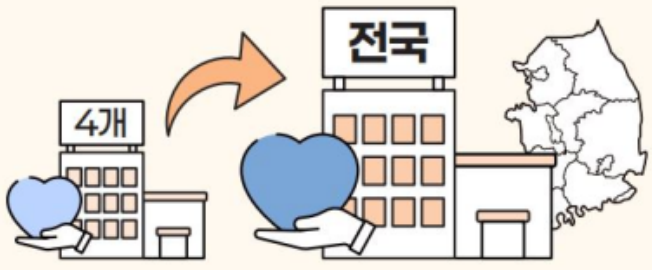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관별 역할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청년미래센터



· 2024년 8월부터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이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청년미래센터는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청년미래센터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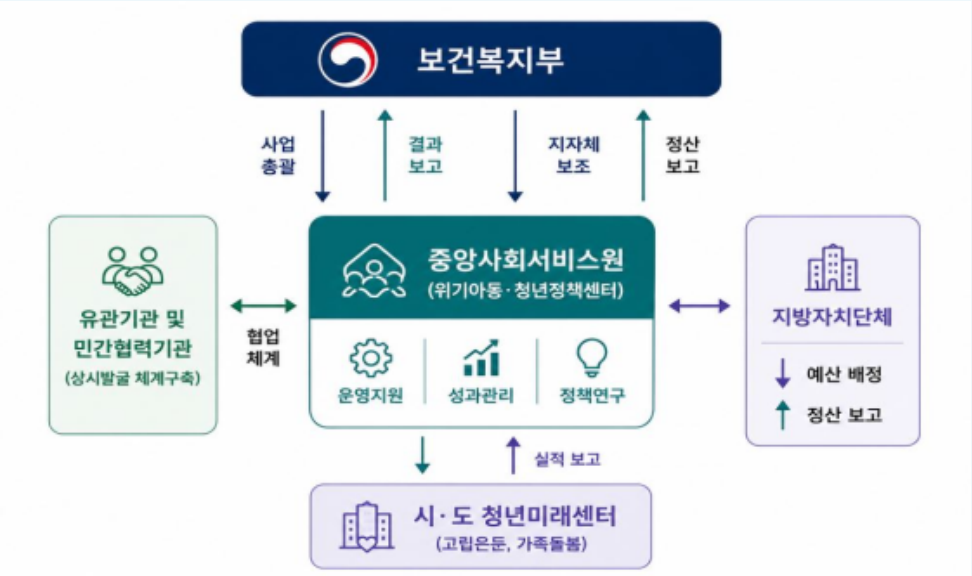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3쪽 참조)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함)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조).

▹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의 평가를 거쳐 정책센터로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참조).

※ 중앙청년미래센터(중앙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교육·성과관리의 중앙 거점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2쪽 및 붙임 2 참조)

전문기관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 위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법인·기관·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4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별표 3).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

▪ 도움이 필요한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mohw2030.co.kr)"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3쪽 참조)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2.1. 사례관리 신청 또는 발굴

2.1.1. 사례관리 신청

“사례관리”란?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례관리 신청권자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사례관리 신청 방법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례관리 신청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서류

그 밖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다만, 1.부터 3.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단서).

※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청년ON(mohw2030.co.kr)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에 신청서 배치, 읍·면·동 담당자는 청년미래센터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관

* 인천, 울산, 전북, 충북 외 지역은 청년미래센터 개소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출처: 복지로(www.bokjiro.go.kr)]

2.1.2. 위기아동·청년 발굴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

직권 상담에 의한 발굴

▪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위기아동·청년 발굴



· 위기아동·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에서 청년미래센터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1쪽 참조)

※ 실태조사

· "실태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말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참조).

·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위기아동·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 위기아동·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 위기아동·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2027. 3. 26.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공데이터)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 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2.2. 상담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2.2.1. 상담 실시

신청 또는 발굴에 따른 상담 실시

사례관리 신청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발굴에 따른 상담의 실시

구분	내용
신청에 따른 상담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발굴에 따른 상담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상담 내용

▪ 위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 초기상담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5항, 제10조제1항 후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조제1항 후단 참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 도움필요 아동·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상담 결과 관리

▪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1항 후단 참조).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돌봄대상가족 요건 미충족 시 사회보장급여 대리 신청

▪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정신질환자 의심 시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

▪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의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2.2. 지원대상자 선정 등

상담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참조).

▹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돌봄대상가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등급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다음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5.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6.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다음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선정 요건

-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

  - 전담조직의 장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결과 안내 등

-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내용 및 신청 절차

  -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위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2.3.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2.3.1. 계획 수립, 관리 및 종료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관리 등

계획 수립 및 관리

▪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례관리 계획 포함 사항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민간 장학금 포함),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계획 변경

▪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사회보장급여 대리 신청

·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위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후단).

· 위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개인정보보호

·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전담조직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사례관리의 종결

자립 목적 달성 등에 따른 종결 결정

▪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례관리 종결 사유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지원 이력의 보유 및 파기

·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함)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일상회복과 자립 등 목적을 달성하여 사례관리 종결 시 본인이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 등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3. 위기아동·청년 지원 내용

3.1. 공통 지원

3.1.1. 건강, 학업, 주거 등 지원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서비스(공통)

▪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다음의 건강, 학업,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구분	내용
심리상담 지원 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건강관리 지원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심리상담 지원 등

▪ 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2조제5호 참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건강관리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지원대상자는 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의 장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참조).

학업 및 취업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3.2.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3.2.1. 자기돌봄비 등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가족돌봄 아동·청년 본인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 서비스 연계
아픈 가족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률 할인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자기돌봄비의 지급

"자기돌봄비"란?

▪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참조).

▪ 자기돌봄비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지원 기준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지급 시기 및 방법

▪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특별지원

▪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참조).

-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본인부담률 할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 간병(돌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연계 서비스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분야 연계 서비스

▪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다음의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및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분야	<예시>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단체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서민금융지원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교통부)
법률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고용노동부)

3.3.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3.3.1.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요

고립도 진단 및 지원 내용

고립도 진단		고립도에 따른 지원 내용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 진단	▶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제안 일정 수준 회복 후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고립·은둔 진단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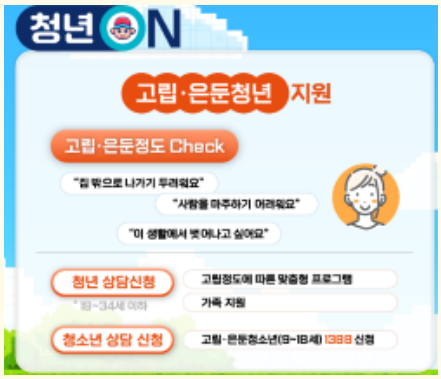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

· 청년ON(mohw2030.co.kr) 누리집에서 자신의 고립과 은둔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테스트를 통해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테스트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청년ON(mohw2030.co.kr) 참조]

Q. 고립과 은둔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는 것은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과 인적 네트워크(사회관계) 보유 및 접촉(외부 외출) 정도에 따라 ①은둔 청년, ②고립 청년, ③고립 고위험군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구분 지표 및 개념도>

구분	경제활동	사회관계	외부외출
고위험군	X (미고려)	△ (사회관계자본 부족)	△ (외출 낮음)
고립	X (미고려)	X (사회관계자본 부족·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X (미고려)	X (사회관계자본 결핍)	**X (외출 없음)**



과학적 판단 척도 및 초기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유형, 정도 등을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은둔 유형은 초기 심리·정서 지원 및 일상생활 회복에 초점을 두고, 고립 유형은 공동생활·가족관계 회복 즉시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등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13쪽 및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2쪽 참조)

Q. 18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행정적으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세~34세)을 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18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현장에서 고립·은둔 위험도, 현재 상황,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9세~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14쪽 및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다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프로그램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고립도
은둔 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 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 접촉 확대	
관계 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 프로그램 본인부담금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는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본인부담금은 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